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86
----------	-------

발의연월일 : 2025. 10. 29.

발 의 자 : 허종식 · 이훈기 · 이재관
김정호 · 유동수 · 허영
박정 · 노종면 · 한민수
서영석 · 김교홍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으로, 송전사업자 단독 사업 추진은 재무적 측면이나 인력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가 있어, 적기에 국가기간 전력망이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적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과 관계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제1항에 따른 송전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조건·절차·효력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귀속 관련 조건 및 비용의 정산, 그 밖에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조제2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시행자) (생 략)	제3조(사업시행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전사 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 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 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 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 을 받아야 한다.
<u><신 설></u>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2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과 관계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제1항 에 따른 송전사업자에게 귀속 시킬 것을 조건으로 지정하여 야 한다.
<u><신 설></u>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조건 · 절차·효력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귀속 관련 조건 및 비용 의 정산, 그 밖에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① (생략) ② 전력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략) <u><신설></u> 2. ~ 9. (생략) ③ ~ ⑥ (생략)	<u>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3조제2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u> 2. ~ 9.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